

울산지방법원 2024. 7. 3 선고 2023가단118063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엠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육삼신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재성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4. 3.

판 결 선 고 2024. 7. 3.

주 문

- 울산 중구 C 임야 17950㎡ 중 1795000분의 106200 지분에 관하여,
가. 피고와 D 사이에 2023. 5. 4.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.
나. 피고는 D에게 울산지방법원 2023. 5. 4. 접수 제45380호로 마친 D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
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거나, 갑 제1호증의 1, 2, 갑 제2, 3호증, 갑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2023. 10. 16.자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, 별지 청구원인 사실과 함께, D가 E의 유일한 딸이자 상속인이면서, 피고의 어머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와 D 사이에 울산 중구 C 임야 17950㎡ 중 1795000분의 106200 지분(이하 '이 사건 땅'이라고 한다)에 관하여 2023. 5. 4. 체결된 매매예약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는 D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땅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23. 5. 4. 접수 제45380호로 마친 D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2.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

가. 피고는, 이 사건 땅에 관한 매매예약 체결 당시에 그것이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나, D의 유일한 재산 처분으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의 선의를 증명할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.

나. 피고는, D에 대한 1억 원 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땅 매매예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, 피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, 유일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도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,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.

3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인다.

판사 이준영

별지